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 보 공 개 서

(주)디지털대성(한우리 독서토론논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04.25

(주)디지털대성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p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p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6p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8p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5p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44p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46p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9p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51p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디지털대성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단우빌딩 6~8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0.03.10	2000.03.11	김희선	02-6276-2666	02-6276-2529
	법인등록번호	110111-1902835	사업자등록번호	114-81-9612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희선 (주)디지털대성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81 (단우빌딩 6~8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희선	02-2104-8600	02-597-3731		
	법인등록번호	110111-1902835	사업자등록번호	114-81-961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임원)	김정열 (주)디지털대성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81 (단우빌딩 6~8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희선	02-2104-8600	02-597-3731		
	법인등록번호	110111-1902835	사업자등록번호	114-81-961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돈구 (주)디지털대성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81 (단우빌딩 6~8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희선	02-2104-8600	02-597-3731		
	법인등록번호	110111-1902835	사업자등록번호	114-81-9612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조호성 (주)디지털대성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81 (단우빌딩 6~8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희선	02-2104-8600	02-597-3731		
	법인등록번호	110111-1902835	사업자등록번호	114-81-9612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주)한우리 열린교육	한우리독서 토론논술	2021.02.0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6 (당산동 3가)	김희선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224272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15,332,476	74,774,417	140,558,059	176,345,994	17,833,539	14,087,389
2022년	218,254,726	72,072,362	146,182,364	188,128,734	21,531,963	15,390,350
2023년	221,746,088	73,687,660	148,058,428	182,385,946	14,594,082	12,915,306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그 근거자료는 [별첨 4]와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희선	대표이사	2015.12~2021.02	(주)한우리열린교육 대표이사	대표이사
			2011.04~현재	(주)디지털대성 대표이사	
	김정열	사장	2015.12~2021.02	(주)한우리열린교육 사내이사	학원사업부 한우리열린교육
			2021.04~현재	(주)디지털대성 사내이사	
	이돈구	부사장	2015.12~2021.02	(주)한우리열린교육 사내이사	경영지원부
			2020.04~현재	(주)디지털대성 사내이사	
	조호성	전무	2015.12~2021.02	(주)한우리열린교육	한우리열린교육
			2021.02~현재	(주)디지털대성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대연	부사장	2011.04~현재	(주)디지털대성 사내이사	이러닝사업부
	김세연	상무	2013.03~현재	(주)디지털대성 사내이사	경영지원부
	박형준	이사	2024.03~현재	(주)디지털대성 사외이사	사외이사
	김형석	전무	2021.04~현재	(주)디지털대성 사내이사	강남대성기숙학원
	박명신	이사	2023.03~현재	(주)디지털대성 사외이사	사외이사
	최호림	감사	2023.03~현재	(주)디지털대성 감사	감사
	호문수	상무	2015.12~2021.02	(주)한우리열린교육	한우리열린교육
			2021.02~현재	(주)디지털대성	
	최명규	전무	2015.12~2021.02	(주)한우리열린교육	한우리열린교육
			2021.02~2023.12	(주)디지털대성	
	오용순	상무	2015.12~2021.02	(주)한우리열린교육	한우리열린교육
			2021.02~2023.12	(주)디지털대성	
	양세현	부사장	2010.12~현재	(주)디지털대성	시너지사업부 이러닝사업부
	이대원	이사	2020.01~현재	(주)디지털대성	경영지원부
	권준학	이사	2020.01~현재	(주)디지털대성	이러닝사업부
	김인규	부회장	2021.02~현재	(주)디지털대성	강남대성기숙학원
	김정현	이사	2022.03~현재	(주)디지털대성	경영지원부
	김승우	이사	2022.03~현재	(주)디지털대성	이러닝사업부 시너지개발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7	2	408명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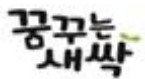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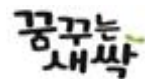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	-	-	-	-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19.04.05 등록	출원 제40-2018-010 2678	(주)디지털 대성	2029.04.05
			등록 제40-1466415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19.04.05 등록	출원 제40-2018-010 2679	(주)디지털 대성	2029.04.05
			등록 제40-1466416		

생각하는 나무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1998.07.06 등록	출원 제41-1996-001 3665	(주)디지털 대성	2028.07.06
			등록 제41-0043469		
생각하는 나무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17.08.25 등록	출원 제40-2017-000 7754	(주)디지털 대성	2027.08.25
			등록 제40-1279919		
생각하는 나무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22.08.10 등록	출원 제41-2011-001 7941	(주)디지털 대성	2032.08.10
			등록 제41-0237562		
소크라테스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19.04.05. 등록	출원 제40-2018-010 2680	(주)디지털 대성	2029.04.05
			등록 제40-1466417		
 한우리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08.08.04 등록	출원 제40-2007-004 2598	(주)디지털 대성	2028.08.04
			등록 제40-0755930		
 한우리	제품 사용 및 대가 수수	2012.01.04. 등록	출원 제41-2010-001 7954	(주)디지털 대성	2032.01.04
			등록 제41-022427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사업 현황

1.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을 시작한 날: 1998년 05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5년 09월 05일)

2.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한우리 열린교육	한우리독서토론논술	박철원	1998.05~2015.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6 한우리빌딩
(주)한우리 열린교육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김희선	2015.10~2021.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6 한우리빌딩
(주)디지털 대성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김희선	2021.02~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6 한우리빌딩

3.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업종

영업표지	업종	
한우리독서토론논술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교육	기타 교육 (생각하는나무/소크라테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501	501	-	524	524	-	566	566	-
강원	13	13		13	13		14	14	
경기	119	119		127	127		138	138	
경남	24	24		25	25		25	25	
경북	26	26		27	27		27	27	
광주	33	33		34	34		35	35	
대구	16	16		17	17		19	19	
대전	11	11		11	11		10	10	
부산	35	35		35	35		36	36	
서울	114	114		121	121		146	146	
세종	2	2		2	2		2	2	
울산	12	12		13	13		13	13	
인천	17	17		17	17		17	17	
전남	13	13		17	17		17	17	
전북	21	21		21	21		21	21	

제주	9	9		8	8		8	8	
충남	21	21		19	19		21	21	
충북	15	15		17	17		17	17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미국	1	1		1	1		1	1	
베트남	1	1		1	1		1	1	
일본	1	1		1	1		1	1	
중국	2	2		2	2		2	2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바로 전 3년간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83	34	0	16	0	501
2022	501	44	0	21	0	524
2023	524	70	0	28	0	566

[한우리독서토론논술]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한우리독서토론논술]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	-	-	-	-	-	-	-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맹 문의 시 제공되는 [별첨 3 :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66	130,777	6,299	1,907,217	49,088	2,327	184	
강원	14	77,125	3,707	279,282	9,293	7,261	725	
경기	138	179,755	9,141	1,907,217	49,088	3,351	184	
경남	25	102,745	4,110	397,232	14,595	4,608	278	
경북	27	100,574	3,381	552,047	15,480	12,800	329	
광주	35	80,559	3,563	570,992	13,902	8,611	560	
대구	19	164,532	7,041	1,044,654	20,857	9,030	693	
대전	10	86,200	2,961	253,774	10,077	4,422	415	
부산	36	147,053	6,609	723,247	25,685	7,773	503	
서울	146	112,783	7,471	713,100	34,751	2,327	291	
세종	2							5곳 미만
울산	13	169,324	7,010	617,586	14,337	10,939	1,181	
인천	17	196,132	12,936	651,937	31,592	14,476	1,217	
전남	17	109,525	3,743	470,916	15,888	14,523	500	
전북	21	83,297	3,712	446,898	12,657	7,261	404	
제주	8	142,684	5,951	797,722	15,927	11,357	569	
충남	21	115,220	4,346	572,854	18,586	5,074	297	
충북	17	77,252	2,838	297,435	9,366	11,590	346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 당	하한	면적 3.3m2 당	
미국	1	1,117		1,117		1,117		
베트남	1	83,086		83,086		83,086		
일본	1	9,170		9,170		9,170		
중국	2	21,854		29,045		14,662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2023년 매출산정 근거 (단위 : 원)

구분	①교재비	교사공급가	매출산정	상품 점유율	교재비평균	매출액평균	②최종 매출액 산정비율
유아	26,000	36,700	141.2%	1.97%	513	724	141.2%
초등	30,000	43,000	143.3%	42.37%	12,711	18,219	143.3%
초등심화	37,000	50,000	135.1%	34.55%	12,783	17,274	135.1%
중등	32,700	45,700	139.8%	19.46%	6,365	8,895	139.8%
고등	32,700	45,700	139.8%	0.31%	102	143	139.8%
특강 등	70,000	97,000	138.6%	1.33%	932	1,292	138.6%
					33,406	46,547	139.3%

당사에서는 본사에서 출고되는 교재비(①항목)만을 알 수 있기에, 현장에서 교사에게 공급하고 받는 <교사공급가>를 통한 매출액 추정만을 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학원수업의 경우 340% 정도를 추가하여야 하나 이는 배제하고 최소 매출액만을 각 상품별 점유율을 반영하여 교재비 평균을 33,406원으로 추정하였고 이 금액에 139.3%(최종매출액 산정비율 ② 항목)를 반영하여 매출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이는 최저금액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이보다 상향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 강원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원주반곡독서교실(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강원지역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14곳이 아니라 13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경기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광명일직데시앙독서교실(신규), 일산동구마두백마독서교실(신규), 화성새봄독서교실(신규), 파주운정초롱꽃독서교실(신규), 수원팔달인계초독서교실(신규), 김포구래호수독서교실(신규), 광명철산1동독서교실1(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기지역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138곳이 아닌 131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경남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창원마산합포지부1(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남지역의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25곳이 아닌 24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경북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이 없어 경북지역 27곳 가맹점 매출액 평균이 그대로 산정된 것입니다.

* 광주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광주양림독서교실1(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광주지역의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35곳이 아닌 34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대구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대구수성매호동독서교실1(신규), 대구달성죽곡협성독서교실(신규), 대구달서북감삼드림시티독서교실(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대구지역의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19곳이 아닌 16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대전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이 없어 대전지역 10곳 가맹점 매출액 평균이 그대로 산정된 것입니다.

* 부산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부산남구대연파크푸르지오독서교실(신규), 부산기장정관방곡독서교실(신규), 부산사상덕포2동독서교실1(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부산지역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36곳이 아닌 33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서울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강북꿈의숲독서교실(신규), 도봉금호독서교실(신규), 마포서강독서교실(신규), 구로덕의독서교실1(신규), 도봉누원한신독서교실(신규), 도봉창동신도독서교실(신규), 용산서부이촌독서교실(신규), 은평수색독서교실(신규), 중랑면목면동독서교실2(신규), 노원한내독서교실(신규), 도봉초당독서교실(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서울지역의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146곳이 아닌 135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세종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이 없고 세종지역 가맹점이 5곳 미만으로 기입 제외하였습니다.

* 울산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이 없어 울산지역 13곳 가맹점 매출액 평균이 그대로 산정된 것입니다.

* 인천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인천남동북지부1(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인천지역의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17곳이 아닌 16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전남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여수웅천독서교실(신규), 순천신대독서교실(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남지역의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17곳이 아닌 15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전북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김제요촌독서교실(신규), 김제신평독서교실(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북지역의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21곳이 아닌 19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제주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이 없어 제주지역 8곳 가맹점 매출액 평균이 그대로 산정된 것입니다.

* 충남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에 대해서는 매출액 추정치에 포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천안서북호반독서교실(신규)의 경우에는 매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충남지역 가맹점 매출액 평균은 21곳이 아닌 20곳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 충북 지역의 경우, 신규 개설 6개월 미만(:계약종료 포함)의 영업점이 없어 충북지역 17개 가맹점 매출액 평균이 그대로 산정된 것입니다.

* 해외(미국, 베트남, 일본, 중국) 지역의 경우에는 미국 1개, 베트남 1개, 일본 1개, 중국 2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66	3,20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2곳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상도,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7 소재 광장빌딩 2층	
	책임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대구광역시	박준석	051-463-6296		113개
	가맹본부와의계약기간	가맹점 모집 권한	가맹계약 체결 권한	가맹금 수령 권한
	본사직영지점	○	○	○
전라도, 제주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상호/명칭	주소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봉죽대로 52 교원공제회간 B1층		
	책임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윤영훈	062-369-9011		87개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 권한	가맹계약 체결 권한	가맹금 수령 권한
	본사직영지점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한우리독서토론논술]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107,083	3,070,378	36,705	
광고	TV,라디오, 인쇄매체	2023.01.01. ~ 2023.12.3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가맹본부 전액 집행
판촉	경품증정	2023.05.01. ~ 2023.05.3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회원소개 이벤트
판촉	경품증정	2023.11.15. ~ 2023.12.31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신규회원 이벤트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점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33 서림빌딩내1층	02-2634-532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디지털대성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 조치내역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아래 금액 이외에 다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가맹본부 지정 금융기관)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가맹본부 지정 금융기관)	확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최초가맹비 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가입비		1,000		계약체 결후 10일 이내	[가맹사업거래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및 계약서 제 18조 [가맹금의 반 환]에 해당되는 사 유에 한함.	반환조건 이외의 경우 가맹비는 소멸됨.
최초교육비		없음				
초도물품 지원비		없음				
㉡ 지역권 보장	지부 50만명 초과	19,000	상표 이용권리 포함			
	지부 50만명 이하	14,000				
	지부 40만명 이하	14,000				
	지부 30만명 이하	9,000				
	지부 20만명 이하	9,000				
	독서문화원 5만 이하	1,000				
독서교실		없음				
합계		㉠ + ㉡				

※ 가맹비는 **가입비**(100만원)와 지역권보장금액(가맹사업형태에 따라 1,900만원 ~ 없음)의 합산으로
 계산 됩니다.

- (예시 1) 인구수 25만명 지역의 지부를 운영할 경우
 : **가입비** 100만원 + 지역권보장금액 900만원 = 총 1,000만원 (부가세 포함시 1,100만원)
- (예시 2) 독서문화원을 운영할 경우
 : **가입비** 100만원 + 지역권보장금액 100만원 = 총 200만원 (부가세 포함시 220만원)
- (예시 3) 독서교실을 운영할 경우
 : **가입비** 100만원 + 지역권보장금액 0원 = 총 100만원 (부가세 포함시 110만원)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인구수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지부	50만명 초과	30,000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계약 이후 소멸)	
	50만명 이하	25,000			
	40만명 이하	20,000			
	30만명 이하	15,000			
	20만명 이하	10,000			
독서문화원	5만명 이하	3,000			
독서교실		1,000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가맹금 내역	금액 (단위 :천원)		
㉠ 가입비(부가세별도)	1,000		
최초교육비	없음		
초도물품 지원	없음		
㉡ 지역권 보장 (부가세 별도)	지부	50만명 초과	19,000
		50만명 이하	14,000
		40만명 이하	14,000
		30만명 이하	9,000
		20만명 이하	9,000
	독서문화원	5만 이하	1,000
	독서교실	-	없음
㉢ 계약이행 보증금	지부	50만명 초과	30,000
		50만명 이하	25,000
		40만명 이하	20,000
		30만명 이하	15,000
		20만명 이하	10,000
	독서문화원	5만명 이하	3,000
	독서교실	-	1,000
합계	㉠ + ㉡ + ㉢		

(예시 1) 인구수 25만명 지역의 지부를 운영할 경우 (부가세 포함)

: 가입비 110만원 + 지역권보장금액 990만원 + 보증금 1,500만원 = 총 2,600만원

(예시 2) 독서문화원을 운영할 경우 (부가세 포함)

: 가입비 110만원 + 지역권보장금액 110만원 + 보증금 300만원 = 총 550만원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인테리어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I 및 시안만 제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필수설비(정착물)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1)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교육사업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필요시)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2) 권역별 가맹개설문의 연락처

지역	TEL	FAX
서울/경기/충남/충북/강원/인천	(02) 6276-2666	(02) 6276-2529
대전/광주/전남/전북/제주	(062) 369-9011	(062) 369-9013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051) 463-6294~6	(051) 463-6297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1) 교육기준

구분	(1)교육 기준				
가맹점 사업자	단계	구분	강의방식	강의주제	강의시간
	1	센터장 기본과정	온라인	지도교사 모집을 위한 멘토링 운영 방법 안내 마인드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운영 한우리 지도교사의 비전과 목표 함양 하기 상권 분석을 통한 전략수립 지도교사가 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안내 전문교사 이미지로 거듭나기 상담 관리 노하우 알리기 수업 지도 역량을 위한 스터디 운영 방안 교사관리방법 지역센터 제 규정 이해 에듀넷 및 한우리 사이트 활용 E-러닝센터 활용 및 본사 교육체계	8H
	2	정기교육	오프라인 1일	신상품 설명 및 교습방법 등	-
	3	특별교육	오프라인 1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2) 계약·채용 기준

구분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 한우리 독서지도사/논술지도사 /유아독서지도사 수료자 또는 자격인증을 취득한 자로서 한우리 독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회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 독서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자. 단, 한우리 독서지도사/논술지도사/유아독서지도사 미수료자는 1년 이내에 한우리 독서/논술지도사/유아독서지도사 과정을 반드시 수료하거나 자격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사업 능력 및 조직 관리 능력이 있는 자 - 본 규칙 제6조 【계약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지역매니저 추천과 임원 면담을 거쳐 승인된 자. 단, 지부 소속 지역센터는 지부장의 추천과 담당 팀장의 면담 후 선정한다.
종업원	법률준수(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 및 인테리어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I 및 시안만 제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해당사항 없음”

8) 가맹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금 분할 납부 없음)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납부일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영업중의 부담이 발생하는 항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비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구분	가맹본부 부담	가맹사업자 부담	()안의 숫자는 점포 확장 또는 이전 없는 환경 개선시
	가맹본부 요청 시	40% (20%)	60% (80%)	
	가맹사업자 자발적변경	-	100%	
점포환경개선 비용	구분	가맹본부 부담	가맹사업자 부담	()안의 숫자는 점포 확장 또는 이전 없는 환경 개선시
	가맹본부 요청 시	40% (20%)	60% (80%)	
	가맹사업자 자발적변경	-	100%	
지연이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영업중의 부담이 발생 하지 않는 항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광고분담금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지역 보장금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재고관리 비용						
회계처리 비용						
POS 사용료						
관측분담금	대부분의 관측비는 가맹본부가 부담하나 신학기 이벤트 등 일부 행사 발생 시 가맹점사업자와 비율을 협의하여 진행함.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홍보물품은 매입금액과 매출액이 동일하여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원관리	월별 신입회원, 휴회회원 등 회원관리가 성실히 되고 있는지 점검	월 1회 이상	문의 : 교육사업팀 (02-6276-2666)
교사관리	월별 신입교사, 휴회교사, 스터디 등 교사관리가 성실히 되고 있는지 점검	월 1회 이상	문의 : 교육사업팀 (02-6276-2666)
홍보 판촉 점검	월별 홍보 판촉 활동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 점검	월 1회 이상	문의 : 교육사업팀 (02-6276-2666)
회계처리			해당없음
재고관리			해당없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영업표지 사용료					해당없음
수시(추가) 교육비					해당없음
광고비					해당없음
판촉비					해당없음
추가 교육비					해당없음
점포 이전비	자체 실시				발생시
(추가)보증금					발생시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으나, 규정의 변경에 따른 추가 보증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에서 일정 금액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할 수 있으며, 영업양수자는 가맹본부에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3)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4)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자는 가맹점 운영 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5)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양도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 (6) 일반적인 양도(유상)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양도(명의변경 등)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가맹계약일]을 새로 부여하지 않는다.
- (7)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8) 가맹본부는 영업양도자와 영업양수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와 무관하게 영업양도자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해지를 희망할 경우 해지사유를 구체화 하여 해지 희망일 30일~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최초 가맹계약을 시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인사유 또는 귀책사유 로 12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초기 정착을 위한 투자비용(홍보관촉물 등)을 회수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 후 잔액을 상환 한다.
- (3) 계약해지(종료)시 회원의 자동귀속을 위해 가맹점사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인수인계를 진행 하여야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로 회원의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 ① 회원을 타 업체(또는 개인독서토론논술)로 전환 시킨 경우
 - ② 회원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 ③ 회원의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 (4)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관련한 상표, 상호, 간판, 114 전화 안내, 기타 표시물 등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 및 모든 회원 자료 및 지도교사의 관리 자료 등의 관련 사항은 가맹본부에 자동 귀속된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철거 내지 제거한후, 계약이행 보증금을 신청한다.
- (6) 제4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7)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8) 계약해지(종료) 이후에도 가맹사업중 습득한 영업비밀을 가맹본부의 서면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할 수 없고, 계약해지(종료) 이후에 한우리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 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

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당사에서 제공하는 교재 및 필도서 등을 포함한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독서논술 프로그램 일체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당사의 지정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교육서비스의 특성상 고객을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해당사항 없음”

귀하가 당사의 지정된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월 회비 및 교육 시간

본 프로그램

① 독서클럽 : 학원법에 의거하여 관할 교육청 기준에 준하여 책정한다.

② 홈독서클럽 : 지역센터에서는 기준 회비 이하로 월 회비를 책정할 수 없다.

구분	프로그램	월 회 비	교육시간
유아정규	꿈꾸는 새싹 (씨앗 1,2호,입문)	92,000원	40분
	꿈꾸는 새싹 1,2호	92,000원	40분
초등정규	생각하는 나무	92,000원	50분
	통합사회 뛰어넘기1,2,3	107,000원	90분
	과학탐탐	107,000원	90분
초등특강	한국사봄	300,000원	3개월(12주)
	소통과교감 (예비중학생)	250,000원	2개월(8주)
중등정규	소크라테스-더리더 I,Ⅱ,Ⅲ,입문	124,500원	90분
	+ 이지중학국어문법(패키지)	144,500원	100분
중등특강	교과문학 맥잡기	250,000원	2개월(8주)
	한국사覽 (예비중 ~ 중등)	260,000원	2개월(8주)
고등정규	고등소크라테스	164,500원	90분

※ 이지중학국어문법(패키지)는 기존 중등정규 수업에 월 40분 추가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독서토론논술 교습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없음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외에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구분	시설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비고
지부	학원 또는 교습소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과 동일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기	
독서문화원	학원 또는 교습소	인구 5만명 당 1점포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기	
독서교실	교습소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당 1점포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기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또한, 당사는 계약 기간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영업지역을 조정합니다.

구분	영업지역 조정 사유
자율분구	지부가 영업지역을 자발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분구 시점에서 명확한 인구 인계 대상자가 선정되어야만 인정되며 지부 평가 직전 3개월 평균 회원수 500명 이상, 인구수 40만명 이상 지부의 분할
행정분구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지부의 분할
의무분구	인구수 40만명 이상 지부 중 인구수 대비 회원점유율이 평가기준(0.2%) 미만인 지부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분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기간 중에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지부의 분할 시 기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의 행정구역 기준에 의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지역을 변경합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10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사업의 계약 기준은 통상 [2]년으로 합니다.

단, 가맹본부의 판단에 의거 재계약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만료 D-6개월 시점에서 직전 6개월간 (:독서교실은 직전 3개월간)의 평가 결과를 확인	D-180
② 평가 결과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사항을 요구하는 문서를(:내용증명) 최대 3회까지 발송 : 예→③, 아니오→A	D-180 ~ D-90
③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불가의 최종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송 : 예→④, 아니오→A	D-90 시점
④ 가맹본부의 계약 불가 최종 통보 후,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	D-day 이후
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보증금을 환불하되, 채무가 있는 경우 공제후 지급 :예→C, 아니오→A	D-day + 10일 이내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시, 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가맹사업에 관련한 상표 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가맹사업에 관련한 간판 등을 철거해야 함	D-day 이후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아니오→B	D-day
B. 지역권 변경 또는 보증금/가맹비의 추가 인상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①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지역센터·설비·강사진 등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제 32조 [계약의 갱신과 거절]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6조 [교육 프로그램 등 공급의 중단] 제 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2.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되며 가맹점사업자의 지도교사와 관리회원은 가맹본부에 자동 귀속된다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제 33조 [계약의 해지] 1, 2, 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

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3.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센터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행태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가맹본부가 파산한 경우 ②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③ 가맹본부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가맹 지역센터 운영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 제 33조 [계약의 해지] 3, 5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수정 사유 및 내용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3. 지부 계약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은 시/군/구 단위이며, 특별시와 광역시 등과 같이 구를 기준으로 분할되어 있는 시는 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맹본부에서 승인할 경우 영업지역을 추가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단,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간의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아래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 기간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역센터 운영 규칙」 제10조 [지부 분구의 종류 및 기준]에 의거 영업지역을 조정한다. ① 자율분구 : 지부가 영업지역을 자발적으로 분할하는 것으로, 분구 시점에서 명확한 인수 인계 대상자가 선정되어야만 인정되며 지부 평가 직전 3개월 평균 회원수 500명 이상, 인구수 40만명 이상 지부의 분할 ② 행정분구 :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지부의 분할 ③ 의무분구 : 인구수 40만명 이상 지부 중 인구수 대비 회원점유율이 평가기준(0.2%) 미만인 지부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분할 8.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기간 중에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지부의 분할 시 기존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점의 행정구역 기준에 의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지역을 변경한다.	계약서 제 12조 [영업지역의 보호] 3, 5, 6, 7, 8항

(2) 재조정 및 동의 절차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본부에서는 계약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이후 진행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교육사업팀 (02-6276-2666)

<계약서 제 30조 [영업의 양도]>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营业을 양도 할 수 있으며, 영업양수자는 가맹본부에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자는 가맹점 운영 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5.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양도자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6. 일반적인 양도(유상)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의 무상양도(명의변경 등)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가맹계약일]을 새로 부여하지 않는다.
7.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8. 가맹본부는 영업양도자와 영업양수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와 무관하게 영업양도자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등의 자료를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營業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1) 營業의 상속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계약서 제 31조 [영업의 상속]>

1. 영업의 상속이란 가맹점사업자 사망 후 당사자의 직계 존·비속에게 지역센터를 인계하는 것이다.
2.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자격과 요건을 구비한 경우 가맹점营业을 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이 营业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34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5조 [최초가맹금]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영업의 대리행사 및 위탁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요청 → 승인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요청 → 승인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한우리독서토론논술]과 동일한 업종의 营业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독서토론논술 교육서비스를 제공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교육사업팀 (02-6276-2666)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의 营业시간 및 营业일수를 아래와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8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주 5일(월~금)	문의: 교육사업팀 (02-6276-2666)

또한 귀하는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상시 근무일 동안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으며, 휴업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이상	-	-	회원수 1,000명 이상에 한함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내용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또는 주 1회 가맹 지역센터를 점검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기준에 위반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본사 직원이 관리 감독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가맹 지역센터의 점검은 강사의 현황과 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교육 프로그램·교구 관리, 지역센터의 위생과 청결 등의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4. 가맹본부는 점포관리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제시 후 1개월부터 그 기준에 의하여 점검한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시정 조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 23조 [감독 및 통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가맹본부가 전액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광고, 홍보 판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사업자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담시에는 부담 대상 가맹점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부담비율과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관리·감독 내용	관련 계약 조문
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사업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할 수 있으며, 광고 및 판촉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2. 가맹본부는 필요시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다. 분담 시에는 분담 대상 가맹점의 협의와 동의를 거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비율과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3. 가맹본부는 당해분기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중에서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음 분기 첫 달의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4.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 제 23조 [광고 및 판촉]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내용	관련 계약 조문
2. 최초 가맹계약을 시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인사유 또는 귀책사유로 12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초기 정착을 위한 투자비용(홍보판촉물 등)을 회수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 후 잔액을 상환 한다. 3. 계약해지(종료)시 회원의 자동귀속을 위해 가맹점사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인수인계를 진행 하여야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로 회원의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① 회원을 타 업체(또는 개인독서토론논술)로 전환 시킨 경우 ② 회원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③ 회원의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8. 계약해지(종료) 이후에도 가맹사업중 습득한 영업비밀을 가맹본부의 서면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할 수 없고, 계약해지(종료) 이후에 한우리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계약서 제 34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2, 3, 8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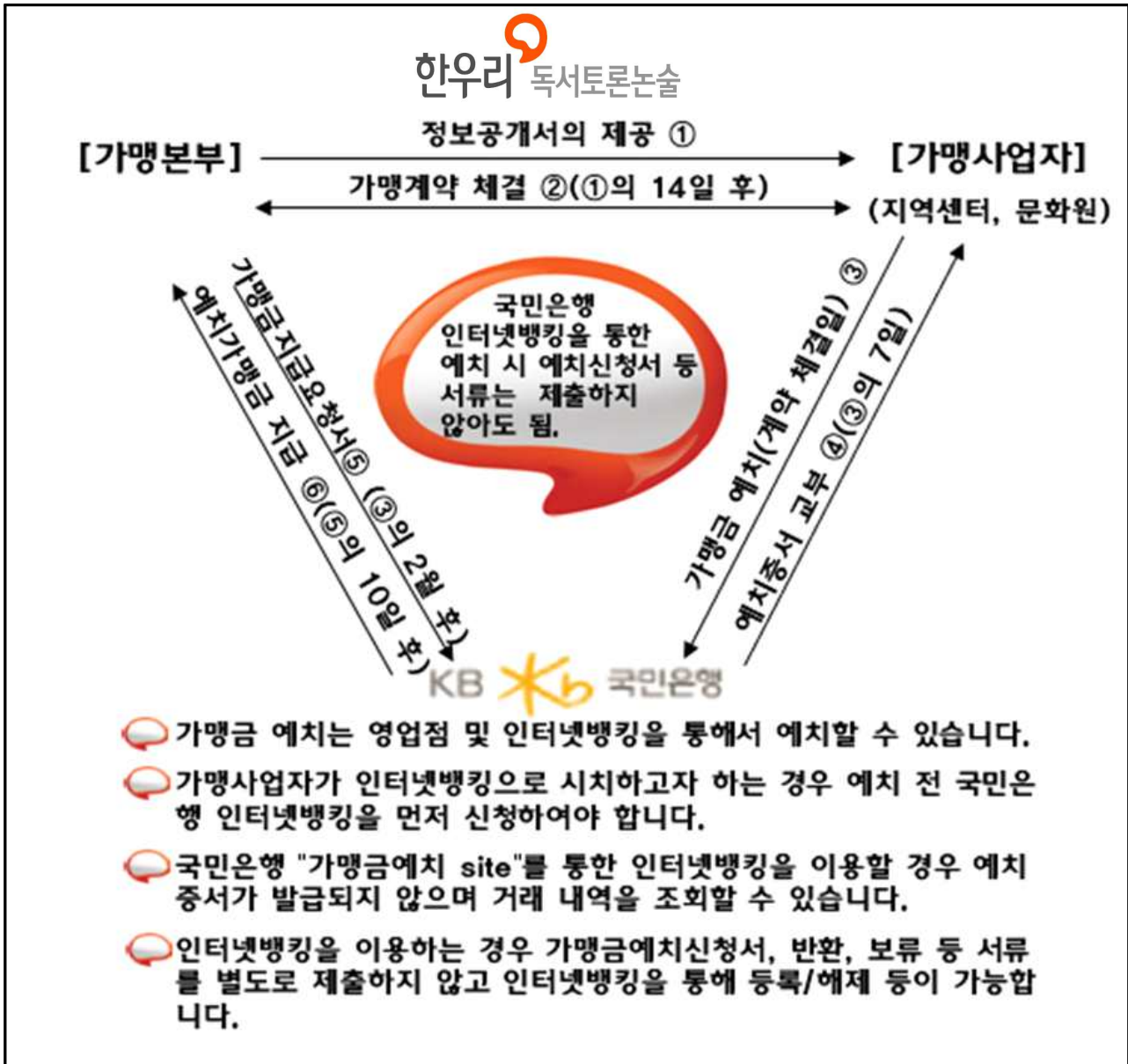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일반개설상담 및 규정, 계약내용 안내 -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관련 서류 수령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및 현장 답사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 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자체실시
가맹점 개원	- 영업개시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가맹금 예치제도에 따른 예치 절차 요약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 ~ 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양도 등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능	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금액	비고
지역별 홍보비 지원	회원 모집 증대를 위한 지역별 홍보 판촉 시 홍보비 일부 지원	회원모집 144,000,000원 교사모집 60,000,000원	매년 (금액변동)
가맹점주 연도대상 운영	매년 각종 부문별 우수 가맹점주를 포상하여 해외연수 및 상금 시상	9,500,000원	23년 대상자 시상금 총액
신입센터장 독서지도사과정 지원	신입 가맹점사업자의 자격요건 취득을 위해 ‘독서지도사과정’ 무료 지원	420,000원/건당	발생시
지역별 학부모설명회 지원	회원 모집 증대를 위한 소규모 학부모설명회 개최시 지원	200,000원/건당	발생시
홍보차량 배정 지원	홍보차량 4대 운영 및 홍보활동 지원	-	매월
가맹점사업자 상조서비스 운영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에 대한 상조물품 지원	-	발생시
가맹점사업자 워크숍 운영	가맹점사업자 친목 및 단합을 위한 워크숍 운영	-	발생시
전략 가맹점 육성지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가맹점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발생시
신학기 홍보지원	신학기 홍보 판촉 활동을 위해 가맹본부 임직원의 인력 및 홍보물품 지원	-	발생시
기타 각종 시책 및 포상제도 운영	기타 각종 홍보 판촉에 대한 시책을 수시로 운영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사기진작 및 매출 증대에 기여	-	발생시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회원관리, 홍보관측계획수립, 교사교육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에서 필요하다고 판 단한 사안에 대해서 가맹점사 업자에게 경영지도 제안 후 진행	-	문의: 교육사업팀 (02-6276-2666)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회원관리, 홍보관측계획수립, 교사교육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가맹본 부에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일 정 및 인력을 지원, 경영지도 실시	-	문의: 교육사업팀 (02-6276-2666)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 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 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 기간	지원내용	비고
가맹점 활성화를	가맹점사업자	전체 가맹점주 및 종업원 대상	연간	경영마인드 판매촉진	온, 오프라인

위한 연간 교육 프로그램 진행	경영지원 교육 (지역센터장 기본과정) 가맹점 종업원(교사)교육 (입문,실무,성장,전문과정)			서비스 등 연간 교육 프로그램 무상 진행	진행
연도대상	전국가맹점(지부)의 연간 실적을 부문별 평가하여 시상금 및 해외연수 제공	부문별 연간 실적 본사평가	매년	부문별 우수가맹점 선정 후 시상금 및 해외연수 제공	
상담자료 (교재) 제공	고객 상담을 위한 상담자료(교재) 제공	전국 가맹점	매월	전 단계 교재 무상 제공	
가맹점 물품 제공	신규 가맹점 초도물품 무상 제공 전국 가맹점 시기별 관측물품(일부품목) 무상 지원	전국 가맹점	매년	신규 가맹점 초도물품(프로그램 판넬, 파라솔 등) 시기별 관측물품 (전단, 파일류, 원고지, 줄노트, 입회원서 등)	
초도물품 제공	가맹점의 신입 종업원(교사) 초도물품 제공	가맹점의 종업원(교사)	매년	관측에 필요한 물품 등 제공	
한포인트 제도	가맹점의 종업원(교사) 대상 회원 실적에 따른 복지 포인트 제공	가맹점의 종업원(교사)	활동기간 동안	1년 이내 신입종업원(교사) 회원 당 1,000p 1년 이후 종업원(교사) 회원 당 200p 적립	
가맹점 신입 종업원(교사) 정착지원금	가맹점의 신입 종업원(교사) 정착을 위한 지원금	신규 등록 후 6개월 내 2개월 평균 회원 5명 이상 1회 8명 이상 1회	등록 후 6개월 내	회원 5명 돌파 10만원 회원 8명 돌파 10만원 총 2회 지원	
가맹점 신입 종업원(교사) 자격과정 수강료 환급	가맹점의 신입 종업원(교사) 독서지도사 과정 수강료 50% 환급	신규 등록 후 8개월 차 2개월 평균회원 8명 이상	등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수강료의 50% 환급	
교사 등급제 및 누적회원 대상 시상	가맹점의 종업원(교사) 판매촉진을 위한 상패 및 시상금 제공	등급 구간 달성 (100,400,600) 누적회원 돌파 (3천,5천,7천,1만 명)	1년 단위 시상	상패/시상금 (20,30,50,100,20 0만원)	
골드스타 교사 포상	우수장기근속교사 포상	교사 등급 및 누적 주문 기준 돌파 교사		대상자 72명 약 30만원상당의 금뱃지 제공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당사는 [한우리독서토론논술]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
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구분	강의방식	강의주제	강의시간
1	센터장 기본과정	온라인	센터장의 역할과 주요업무 교사스터디 운영 모델 각종 문서 및 양식 작성과 활용 목표 및 조직 관리 지역센터장 제규정 이해 마케팅에 대한 이해 지역 마케팅 전략 수립 한우리 에듀넷 및 홈페이지 활용 본사 교육체계이해와 e-러닝센터 활용 교사 모집 및 육성 표준 모델 지역센터멘토링 인정받는 센터장 되기	8H
2	정기교육	(온)/오프라인	신상품 설명 및 교습방법 등	-
3	특별교육	(온)/오프라인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 위 과정은 본부의 상황에 따라 일부 강의주제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1.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한우리독서토론논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반드시 한우리 독서지도사/논술지도사 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계	구분	강의방식	최소시간	비용	비고
1	센터장 기본과정	온라인	8H	없음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계약 기간 동안 아래 호에 해당하는 지역센터는 본사의 적절한 제재(프로그램 공급 중단 및 본사에서 지원하는 모든 혜택 중단 등)를 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내용	관련 계약 조문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는 제재(프로그램 공급 중단, 본사에서 지원하는 혜택의 중지, 계약 종료 및 해지 등)를 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지도교사와 관리회원은 가맹본부에 자동 귀속된다.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청구를 한다. 9.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회의, 훈련 과정 등을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하고, 본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편람의 내용 등을 인쇄 또는 복사 배포 금지	계약서 제 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9항								
본사가 정한 교육 및 회의, 훈련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참석 중 무단이탈한 경우 다음의 벌칙을 받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1회 적발</td><td>사유서 제출</td></tr> <tr> <td>2회 적발</td><td>① 교사용 교재 20% 무상지원 중단 ② 회원용 교재 비치용 지원 중단 ③ 기타 모든 본사 지원 중단</td></tr> <tr> <td>3회 적발</td><td>계약 기간 종료 시 재계약 불가</td></tr> </tbody> </table>	구분	내용	1회 적발	사유서 제출	2회 적발	① 교사용 교재 20% 무상지원 중단 ② 회원용 교재 비치용 지원 중단 ③ 기타 모든 본사 지원 중단	3회 적발	계약 기간 종료 시 재계약 불가	지역센터 관리 규정 제 4조[지역센터의 의무] 5항
구분	내용								
1회 적발	사유서 제출								
2회 적발	① 교사용 교재 20% 무상지원 중단 ② 회원용 교재 비치용 지원 중단 ③ 기타 모든 본사 지원 중단								
3회 적발	계약 기간 종료 시 재계약 불가								

IX. 가맹본부의 직영점^①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해당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교육사업팀(02-6276-266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이 름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별첨 2] 가맹금 예치 신청서 (앞)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예치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가맹 본부	상호명(영업표지)	(주)디지털대성 (한우리 독서토론논술)
	성명(대표자)	김 희 선
	주소(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단우빌딩 6~8층 (전화: 02-6276-2666)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국민은행 귀하 영등포구청역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2] 가맹금 예치 신청서 (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앞)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일	202 년 월 일	작성자	기 우 진
			☎ 02-6276-2542

[(주)디지털대성(한우리 독서토론논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 년 월 일 [] 귀하에게 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인근 가맹점과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예시 : 광역시(시) 내 직선거리 기준)

구분	00지부	00독서교실	00지부	00문화원	00지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권역별 가맹점(독서교실)의 직전 사업연도 최저매출액

(단위 : 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확인서

본인 []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디지털대성(**한우리** 독서토론논술))이 본인에
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 포함)를
2023년 월 일 []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가맹본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52-22 단우빌딩 6~8층 대표이사 김희선	

< 작성시 유의사항 >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가맹희망
자의 자필로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별첨 4] (주)디지털대성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주)디지털대성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손 익 계 산 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